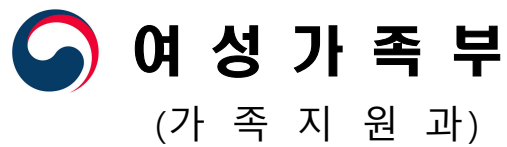
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0. . .	
연월일	(제 회)	

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40호, 2020. 10. 20. 공포, 4. 21. 시행)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복지급여 사유의 확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'20.12.23.~'21.2.1.)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

5조의6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가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

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
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추진실적의 평가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
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
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
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할
수 있다.

제6조(계획 수립 등의 협조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장 및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
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
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
하여야 한다.

제10조 중 “체류”를 “합법적으로 체류”로, “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
국적”을 “대한민국 국적”으로, “사람으로서”를 “모 또는 부로서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
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(이하
이 조에서 “시스템“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및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3조(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</u>

<신 설>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(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추진실적의 평가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계획 수립 등의 협조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

제10조(외국인에 대한 특례)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외국인에 대한 특례) -----

-----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

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---

----- 모 또는 부로서 -----

-----.

제13조의2(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·

운영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"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및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

	<u>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51